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가단101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10.

##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1/2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2.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28. 접수 제132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범준

#별지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합니다) 제39조의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동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의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74134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자, 별지 목록에 기재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1/2 지분 공유자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E)).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 행위 수익자입니다.

### 2.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경우 등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배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C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합니다)의 운전자로, 2007. 11. 29. 08: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 2인을 충격함에 따라 위 보행자 2인 중 1인인 망 I이 중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J 주식회사(현 K 주식회사)는 C의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임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뒤, C에 대하여 구상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합니다)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가단27714,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고, 위 선행 사건은 원고 J 주식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27714 판결문, 갑 제4호증의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배법 제45조 제1항<sup>1)</sup> 규정에 따라 위 보상업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구상)업무를 보험회사 등에 위탁하여 오다가, 2020. 2. 28. 고시 제231호에 따라 대위행사 권한의 위탁기관을 보험회사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였습

1) 자동차손배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0.>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니다(갑 제2호증 참조).

기존에 보험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원고가 법령에 근거한 구상업무 기관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10. 2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또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5호증의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74134 판결문, 갑 제5호증의 2 송달증명원, 갑 제5호증의 3 확정증명원).

따라서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라는 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 3. 피고와 C의 사해행위

#### 가. C과 피고 사이의 처분행위(사해행위)

C은 2022.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담보로 하여 채권 최고액을 1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28. 접수 제 13292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 나. C과 피고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또한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원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C에 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10.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은 2023. 1. 9. 기준 436,734,246원(= 원금 120,000,000원 + 지연손해금 316,734,246원)에 이릅니다(갑 제6호증 지연이자 계산서).

그런데 C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인 대구 중구 E는 2022. 9. 기준<sup>2)</sup> 이 사건 부동산과 전용면적이 동일하고 층이 유사한 24층이 금 710,000,000원에 거래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된 후 2022. 7. 12.에 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 현재까지 4개월 남짓의 거래정보만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C의 공유지분(1/2지분)의 가액은 그 절반인 355,000,000원(= 710,000,000 x 1/2) 밖에 되지 아니하며(갑 제7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캡처화면), 이미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소의 주식회사 L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C은 2022.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뒤(갑 제8호증 탄원서 참조), 매우 석연치 않게도 2022. 11. 28.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수익자가 수익 당시 악의가 아니라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가운데, 피고는 C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를 능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로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

었으므로,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 변 경 된 청 구 원 인

### 1. 기존 주장의 원용

원고는 아래에서 변경한 청구원인과 모순되지 않는 기존의 청구원인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변경된 청구취지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의 2023. 3. 14.자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3. 결론

원고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lt;별지&gt;

## 부동산 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중구   동[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33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147.3839㎡

2층 656.2696㎡

3층 656.2696㎡

4층 656.2696㎡

5층 656.2696㎡

6층 656.2696㎡

7층 656.2696㎡

8층 147.3839㎡

9층 656.2696㎡

10층 656.2696㎡

11층 656.2696㎡

12층 656.2696㎡

13층 656.2696㎡

14층 656.2696㎡

15층 656.2696㎡

16층 656.2696㎡

17층 656.2696㎡

18층 656.2696㎡

19층 656.2696㎡

20층 656.2696㎡

21층 656.2696㎡

22층 656.2696㎡

23층 656.2696㎡

24층 656.2696㎡

25층 656.2696㎡

26층 656.2696㎡

27층 656.2696㎡

28층 656.2696㎡

29층 656.2696㎡

30층 656.2696㎡

31층 656.2696㎡

32층 656.2696㎡

33층 656.2696㎡

34층 436.742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2

대구광역시 중구  대 37277.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8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3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7277.4분의 40.3692 칸.

